

#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1
----------	----

2018년 9월 14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희걸 의원(찬성의원 10명)
- 나. 제안일 : 2018년 7월 24일
- 다. 회부일 : 2018년 7월 30일
- 라. 상정일 :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8년 9월 6일 상정·의결(수정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희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은 2000.10.10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바 해당 지급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하는 한편, 지급범위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및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.

다. 입법예고 (2018. 8. 2. ~ 8. 9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### 가. 개정의 취지 및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교통비와 급식비 등 지급기준을 조정하고, 시행규칙(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)<sup>1)</sup>에 규정된 지급기준을 조례(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10조의 2 제1항 및 {별표})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현행(규칙)	개정(조례)
·교통비 : 3,000원 이내 ·급식비 : 5,000원 이내	·교통비 : 8,000원 이내 ·급식비 : 12,000원 이내
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조례로 격상시켰다는 측면과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제정이후(2000.10.10.)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음식/숙박 물가지수 : 67.373(2000.10) → 107.75(2018.08)로 60% 상승

※ 교통 물가지수 : 73.490(2000.10) → 104.56(2018.08)로 42% 상승

- 1)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경비지원) ①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□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(제2조 관련)

지급대상	지급기준
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	· 봉사시간 : 1일 4시간 이상 · 교통비 : 3,000원 이내 · 급식비 : 5,000원 이내 · 활동용품비 등

## 나. 경비지급의 자원봉사활동 취지 훼손 여부(안 제10조의2 제1항)

- 안 제10조의2 제1항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겠음.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<u>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	제10조의2(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<u>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

- 금번 자원봉사 필요경비 지원근거의 마련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봉사활동의 필요성 증대와 서울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감소에 대응하고, 민(民)이 앞장서고 관(官)이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시민공동 사회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상위법령(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2조2))에서 무보수성, 자발성을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- 2)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(기본 방향)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.
1.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  2.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(非政党性), 비종파성(非宗派性)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3. 모든 국민은 나이, 성별, 장애, 지역,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4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·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아울러, 현재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에는 보험의 가입 등 자원봉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(제14조)<sup>3)</sup>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항(제18조)<sup>4)</sup>만 규정되어 있고, 자원봉사자의 활동 필요경비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조례에 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검토와 함께 필요경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필요시 관련 근거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또한, 행정국은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여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환경과 동기 부여 등 자원봉사 토대 마련 증진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### 다. 경비 지급기준의 적정성 여부변경(안 [별표 1] 신설)

- 안 [별표 1]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필요경비를 물가상승률에 근접하게 지급기준을 상향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				
<p>&lt;신 설&gt;</p>	<p>[별표 1]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대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봉사시간: 1일 4시간 이상</li> <li>·교통비: 8,000원 이내</li> <li>·급식비: 12,000원 이내</li> <li>·활동용품비 등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급대상	지급기준	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봉사시간: 1일 4시간 이상</li> <li>·교통비: 8,000원 이내</li> <li>·급식비: 12,000원 이내</li> <li>·활동용품비 등</li> </ul>
지급대상	지급기준				
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봉사시간: 1일 4시간 이상</li> <li>·교통비: 8,000원 이내</li> <li>·급식비: 12,000원 이내</li> <li>·활동용품비 등</li> </ul>				

- 3)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4조(자원봉사자의 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4)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지급대상	지급기준	
	현행(규칙)	개정(조례)
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	·교통비 : 3,000원 이내 ·급식비 : 5,000원 이내	·교통비 : 8,000원 이내 ·급식비 : 12,000원 이내

○ 지급기준 제정(2000.10.10.)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이 없이 고정되어 있던 현 규칙의 규정사항에 대해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것임.

○ 그러나, 봉사시간(1일 4시간) 대비 교통비(8,000원)와 급식비(12,000원)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와 전국 광역시·도의 대다수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경비(참고자료)의 경우, 지급기준의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경우도 금액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1차 행정국 의견 :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, 물가상승률과 자원봉사활동 취지 등을 감안하여 급식비는 공무원 급식 단가 기준(8천원)으로, 교통비는 5천원 이내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(수정의견).

※ 2차 행정국 의견 : 지급기준은 일정기간(3년)마다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의 소요시간, 기간, 절차 등 지급기준 개정의 유연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(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 제안 의견).

○ 따라서, 자원봉사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물가상승률과 자원봉사활동 취지,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17개 광역시도중 서울시, 충남, 대전, 울산, 세종, 광주광역시 5개 도시가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지급하고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수정\* 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는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의2제1항).
- 안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도록 함(안 제10조의2제2항).
- 안 [별표 1]을 삭제함.

8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(재석위원 8명, 전원찬성).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#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 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6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정에 맞는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의2제1항).
- 안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도록 함.(안 제10조의2제2항).
- 안 [별표 1]을 삭제함.



#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의2제1항 중 “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”를 “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10조의2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,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여야 한다.

안 [별표 1]을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의2(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<u>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10조의2(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<u>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10조의2(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<u>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
<신 설>

[별표 1]

<삭 제>

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

지급대상	지급기준
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	·봉사시간 : 1일 4시간 이상 ·교통비 : 8,000원 이내 ·급식비 : 12,000원 이내 ·활동용품비 등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지원할 수 있다.”를 “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10조의2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,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의2(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<u>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10조의2(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<u>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